



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학 모의고사 및 해설(5)

| 한상기 교수 | 박문각 경찰학원

23. ‘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수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·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.
- ②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범죄수사나 다른 행정목적(예: 풍기의 단속)을 위해서도 가능하다.
- ③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경우 급박하므로 경찰관이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④ 흥행장·여관·음식점·역 및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는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·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.

- ① 0개 ② 1개
③ 2개 ④ 3개

[정답] ①

- 【해설】 경찰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■ 난이도 상**
- ① (X)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(경직법 제5조, 제6조)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성이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[◆수사를 위하여(X)]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.(제7조)
 - ② (X)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행정상 목적(위험방지)에 학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사나 다른 행정목적(예: 풍기의 단속)을 위해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.[◆범죄수사 목적 출입(X)]<01승진>
 - ③ (X)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시(예방출입, 긴급출입, 긴급검색)에 경찰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,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[◆ 불이 난 여관에 위험방지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는 불필요(X)]
 - ④ (X) 이때 상대방은 경찰관의 출입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강제출입권의 성질을 가진다.<13경간·13.2채용>

24. ‘경찰장비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·포승(捕繩)·호송용 포승·경찰봉·호신용 경봉·전자충격기·방패 및 전자방패·석궁이 있다.
- ② “무기”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권총·소총·기관총(기관총을 포함)·산탄총·유탄발사기·박격포·3인치포·함포·크레모아·수류탄·폭약류 및 도검 등을 말한다.
- ③ 분사기·최루탄 등에는 근접분사기·가스분사기·가스발사총(고무탄 발사검 용제외) 및 최루탄(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있다.
- ④ 기타장비에는 가스차·살수차·특수진압차·물포·석궁·다목적 발사기 및 도주차량 차단장비·최루탄 발사장치가 있다.

- ① ⑦() ⑧() ⑨() ⑩()
② ⑦() ⑧() ⑨() ⑩()
③ ⑦() ⑧() ⑨() ⑩()
④ ⑦() ⑧() ⑨() ⑩()



[정답] ①

- 【해설】 경찰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■ 난이도 중**
- ① (X) 경찰장구: 수갑·포승(捕繩)·호송용 포승·경찰봉·호신용 경봉·전자충격기·방패 및 전자방패[◆석궁(X)](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)<17·18승진·10.1·13.1·14.2·15.2·16.1채용> [●수포 봉방총].
 - ② (O) 경찰무기: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<17·18승진·10.1·13.1·14.2·17.1채용>
 - ③ (X) 분사기·최루탄 등: 근접분사기·가스분사기·가스발사총(고무탄 발사검 용제외(X)) 및 최루탄(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(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)<17승진·14.2·17.1채용> [●분발체장].
 - ④ (X) 기타장비: 가스차·살수차·특수진압차·물포·석궁·다목적 발사기 및 도주차량 차단장비[◆최루탄 발사장치(X)](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)<12경간·17승진·10·14.2·17.1채용> [●물차목석].

25. ‘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’상 ‘손실보상 심의위원회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, 시·도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.

- ① 1개 ② 2개
③ 3개 ④ 4개

[정답] ②

- 【해설】 경찰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■ 난이도 상**
- ① (O)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<15.1·17.2·18.2채용>
 - ② (O)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<17승진>
 - ③ (X)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정한 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[◆대통령이(X)]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.(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4항)
 - ④ (X)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[◆경찰청장 등이 지명(X)](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2조)<18·20승진>

26.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

-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② 당사자는 과태료, 가산금, 증가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(“신용카드 등”)으로 낼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(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, 증가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)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(이하 “징수유예 등”)를 결정할 수 있다.

④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(“징수유예 등”)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에서는 ‘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’를 과태료 징수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.

- ① ⑦() ⑧() ⑨() ⑩()
② ⑦() ⑧() ⑨() ⑩()
③ ⑦() ⑧() ⑨() ⑩()
④ ⑦() ⑧() ⑨() ⑩()

[정답] ④

- 【해설】 경찰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■ 난이도 중**
- ① (X)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[●3년간(X)](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5조 제1항)<14승진·11경간·17.1순경>
 - ② (O)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의2 제1항
 - ③ (O)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
 - ④ (O)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
 - ⑤ (X) 과태료 징수유예 사유: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[●3개월 이상(X)]

27. ‘통고처분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①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법정형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, 20만 원 이하 벌금, 구류,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.
- ②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로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.
- ③ 성명·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,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,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경범죄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자 제외사유이다.
- ④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.

- ① ⑦() ⑧()
② ⑦() ⑧()
③ ⑦() ⑧() ⑨()
④ ⑦() ⑧()

[정답] ①

- 【해설】 경찰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■ 난이도 중**
- ① (O) 경범죄 처벌법.
 - ② (O) 통고처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.(통고처분 제외사유)<18경간>
 - ③ (X) 성명·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,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,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**도로교통법**이 규정하고 있는 통고처분 제외사유이다.[●경범죄 처벌법 규정(X), ●범칙자 제외사유(X)]<02·07승진·10채용>
 - ④ (X)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.[●취소할 수(X)](제9조 제2항)<04승진·18.3채용>

< 다음호에 계속 … >